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1998년 8월 24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가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15평)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1평)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경감범위를 확대함.(안제13조제2호)

나.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도축세를 면제함.(신설 안 제24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준칙(세정13400-327호 및 세정 13400-440호)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바. 조례·규칙심의회 : 제10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8.8.13) 원안의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외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전용면적 <u>60제곱미터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략) <p><신설></p>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1.(현행과 같음)</p> <p>2. <u>60제곱미터이하인</u></p> <p>3.(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u>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 조례안, 관계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 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 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모사전송

수신번호	4764	수신일시	98.5.29
수신처	세무	전화번호	57-6011
수신자	김태영	발신처	세무

강원도	법제심사필
강원도	98년 5월 29일 제 2

(200-700) 춘천시 봉의동 15/ 전화 57-6011 전승 250-2197(행197)/ 담당 김태영

문서번호 세정 13100-327
 시행일자 1998. 5. 29. (년)
 (정규)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선결	작성	지시	
일차	1998. 5. 29	결재	김태영
접수	66P3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보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첨과 같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내무국장전결



수신처 : 더 (01 ~ 18)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생략)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생략)

1.(현행과 같음)

2. -----85제곱미터이하인

3.(현행과 같음)

수신번호	6563	수신일자	98.7.21
수신처	세무(세정·재무)과	수신처장명	주기윤
수신자명		수신처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의동 15

강원도	법제심사필
	98년 7월 21일(제16호)

모사전송

수신처장명 10%이상 높이기예 슬선 참여합니다
원 도
후 200-700 강원도 천안시 봉의동 15 / 전화(0361)57-6011 / 전송(0361)250-2497
세정과 과장 : 주기윤 담당자 : 김태영

문서번호 세정 13400 ~ 440
시행일자 1998. 7. 21. (년)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선결	과재	지시	고해개제 중지
접일자	'98.09.21	결	> 6563
수번호	9870	재공	
처리과		람	
담당자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속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내 무 국 장 박수준



수신처 : 더(01~18)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제○○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〇〇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p>

제10회조례 · 규칙심의회결결과

□ 조례안 _____ 2건

□ 내 역

순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건 명	비 고
			[조례안] : 2건	
1	1998- 24	재 무 과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1998- 25	북 지 과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	원안가결